

-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590
------------	------

2020년 6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0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 지하철은 개통 된 지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가 가중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내구연

한 초과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량이 필요함

- 이에,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방비 매칭분을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기관현황

- ▶ 설립일자 : 2017. 05. 31
- ▶ 설립목적 : 지하철 건설·운영(서울지하철 1~8호선) 및 부대사업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 ▶ 조 직
 - 본 사 : 6본부, 9실, 45처 / 현 업 : 1부문, 2원, 6단, 58센터, 42사업소
- ▶ 인 원 : 정원 16,742명/현원 16,846명 ('20.4.1.기준)
- ▶ 지원시설 : 해당없음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경 대상 사업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2020년도 대상기관 주요 출자사업('19.8월 출자동의)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 문화예술철도 조성, 기타 지하철 안전관리 사업 등

○ 출자의 필요성

- 1~4호선은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주요시설물의 내구연한 초과율이 높고, 2018년 성능평가 결과 D등급 시설이 절반 이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다만, 재투자자는 신규 건설 수준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며,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추경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편성하기 이전에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3월말 기준 영업연장 301.31km, 지하철역 278개역, 전동차 3,551량을 운영하면서 일평균 563만명의 수송인원과 35억 75백만원의 운수수익을 나타내고 있으나, 당기 순손실 5,865억원, 부채 4조 6,455억원 등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에 따른 수입감소 등의 이유로 2020년 부족재원은 9,7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경제인구 감소에 따른 지하철 이용자 증가 한계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서울지하철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서울시는 지하철 운영 수입만으로는 서울지하철의 안전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 및 운영기관과 함께 매칭등으로 사업비를 출자하고 있음

※ 참고 : 무임수송인원 및 손실 현황 (1~8호선)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9월
무임인원	248,145	249,939	253,559	258,250	261,047	201,905
노인	192,972	196,891	202,263	208,466	212,843	165,654
장애인	51,425	49,472	47,816	46,405	44,967	33,948
유공자	3,748	3,576	3,480	3,379	3,237	2,303
무임손실	287,039	314,355	344,185	350,647	353,974	273,406
노인	223,214	247,725	274,553	283,059	288,617	224,357
장애인	59,491	62,139	64,908	63,000	60,969	45,932
유공자	4,334	4,491	4,724	4,588	4,388	3,117

- 서울시는 이미 2020년 예산으로 4,794억 79백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출자금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에 180억 56백만원(24.5%) 증액된 430억 23백만원을 추가로 출자코자 하는 것임
-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개통한지 최대 45년이 경과되어 노후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며, 서울시는 2023년까지 4조 5,0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현재 만성적 적자구조인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자원조달이 불가능한 실정인 점을 고려할 때

당면한 노후시설 재투자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해야하는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동 동의안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주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출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추경 예산안¹⁾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는 출자 이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힘쓰는 한편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참고 : 2020년도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금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출자금)	'20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산출근거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3,023,562	24,967,000	18,056,562	- 분기기 등 28개 시설 개선

1)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1616) 제출일 : 2020.6.5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동의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1590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 나. 서울 지하철은 개통 된 지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내구연한 초과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량이 필요함
- 다. 이에,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방비 매칭분을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기관현황

- ▶ 설립일자 : 2017. 05. 31
- ▶ 설립목적 : 지하철 건설·운영(서울지하철 1~8호선) 및 부대사업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 ▶ 조 직
 - 본 사 : 6본부, 9실, 45처 / 현 업 : 1부문, 2원, 6단, 58센터, 42사업소
- ▶ 인 원 : 정원 16,742명/현원 16,846명 ('20.4.1.기준)
- ▶ 지원시설 : 해당없음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추경 대상 사업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2020년도 대상기관 주요 출자사업('19.8월 출자동의)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문화예술철도 조성, 기타 지하철 안전관리 사업 등

다. 출자의 필요성

- 1~4호선은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주요시설물의 내구연한 초과율이 높고, 2018년 성능평가 결과 D등급 시설이 절반 이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다만, 재투자는 신규 건설 수준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며,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추경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출자금 예산(안)

※ 작성자 :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총괄팀 정인경(☎2133-4335)

붙임

서울교통공사 출자금 추경예산(안)

가. 출자금 : 43,023,562천원 * 예산 심의과정에서 금액 변경 가능

나. 대 상 : 1개 사업(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단위 : 천원)

구 분(출자금)	'20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산출근거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3,023,562	24,967,000	18,056,562	- 분기기 등 28개 시설 개선